

제9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2)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기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 9% 경감한다.

(4)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5) **그 밖의 이용부담액**(이미용, 외출 이동 시 교통비 등)은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다.

(6)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7) 방문요양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방문요양	분류	30분 이상
	30분 이상	14,530
	60분이상	22,310
	90분 이상	29,920
	120분 이상	37,780
	150분 이상	42,930
	180분 이상	47,460
	210분 이상	51,630
	240분 이상	55,490
방문목욕	분류	금액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74,4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67,1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40%(경감대상) 60%(감경대상) 85%(일반) 100%(수급자)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40%~100%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본인 부담금	보험료 (개인부담금)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6%(감경대상)	보험공단이 60%이고 본인 부담금이 40%임
		9%(감경대상)	보험공단이 40%이고 본인 부담금이 60%임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8)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 1)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3)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4)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 1) 이용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 3)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 5)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2) 이용자가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3) 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4)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5)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성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6) 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3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 7)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